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24. 11.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I. 추진배경 및 문제점 .....	1
II. 추진방향 및 대책 .....	5
1.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	6
2. 플랫폼 책임성 제고 .....	9
3. 신속한 피해자 보호 .....	11
4.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	14
III. 관리체계 구축 및 향후 계획 .....	16
붙임1 : 대책 전후 비교 .....	17
붙임2 : 과제 목록 .....	18
붙임3 : 정기국회 입법현황 .....	20

# I. 추진배경 및 문제점

##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24.8), 중고생 집단 사이 유포('24.8)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

\*\*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는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VIP 발언 >

- “딥페이크는 기술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철저한 실태파악과 수사를 통해 뿌리 뽑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하기 위한 교육도 강구해 줄 것”(8.27, 국무회의)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할 것” (10.21, 경찰의날 축하)

○ 생성형 AI 보편화,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 확산 등에 따라 범죄 인식이 낮은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주로 발생

○ 개인 대화방內 유포 등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렵고, 급속한 확산, 2차 피해 등으로 개인에 심각한 고통과 사회 불신 초래

□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시급한 입법, 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

○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TF\* 구성('24.8.30~), 관계부처, 전문가·기업,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응 방안 마련

\*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여가부, 경찰청 등 참석

TF 회의	▶ 범정부 TF 회의 4회('24.8.30, 9.6, 9.26, 10.23) ▶ 관계차관회의 1회(국조실, '24.9.13), 실무회의 3회(국조실, '24.9.23, 9.24, 10.15)
간담회 등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방문 및 간담회(국조실, '24.9.10) ▶ 전문가 토론회(방통위·방심위 등, '24.9.12) ▶ 전문가 및 해외플랫폼 기업 간담회(국조실, '24.9.12, 9.19) ▶ 대표 플랫폼 기업 간담회(과기부, 9.19)

## 2 현황 및 문제점

### □ 피해현황 및 범죄 특징

○ '21년 통계 작성 이후 방심위 심리, 피해자 지원 건수 5배 이상 증가

- 특히, 피의자·피해자 중 10대 비중이 높은 상황(피의자 10대 비중 73.6%)이며, 범죄라는 인식도 부족

<피해 추이>

\* ( )은 '21년 기준 증가율

구 분	'21	'22	'23	'24.10월
방송통신심의위 심의건	1,913	3,574(87%)	7,187(276%)	10,305(439%) *9월 기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지원 피해자	176	212(20%)	423(140%)	1,201(582%)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신고건	156	160(3%)	180(15%)	964(518%)

- △기술발달로 인한 접근 용이성, 정교화 경향 △SNS를 통한 급속한 확산 △지인간 범행 및 2차 피해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피해 극심

### □ 주요사례

- 유명인 뿐 아니라 대학, 중·고등학교, 군(軍) 등 다양한 곳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폭 넓게 피해 발생

사례명	피해상황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 등 대학 겹지방	○ 인하대생 최소 4명 피해, 텔레그램 대화방 1200여명 가입(이데일리, 8.20) ○ 대학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유 단체방 70여개 존재(매일경제, 10.18)
10대 딥페이크 성범죄	○ 학교피해 현황('24.1.1~10.25): 피해신고 542건 피해자 901명(수사의뢰 457건) ○ 경찰수사 현황('24.1~10.25): 506명 피의자 검거 (10대 411명)
군 딥페이크 성범죄	○ 군 피해현황('24.9.3~11.5): 피해신고 38건
테일러 스위트 딥페이크 피해	○ 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트 딥페이크 음란 이미지 유포, X 업로드 후 17시간만에 조회수 4700만회(조선일보, 1.28)

□ 그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20.4) 등을 발표했으나,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

○(**처벌·수사 사각지대**) △불법촬영물에 비해 약한 성적 허위영상물 처벌\*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등 법·제도적 사각지대 존재

- \* 제작·유통 시: 불법촬영물(7년 이하, 5천만원 이하) VS 허위영상물(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 텔레그램 등 해외기반 SNS를 통해 유포되는 특성상 신속한 수사 및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의자 검거도 곤란

○(**플랫폼 책임성 미약**)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이나 구글 등 국내 사업소를 둔 해외 플랫폼은 관련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방통위, 과기부 등) >

- ▶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등 책임자 지정 △음란물 등 불법정보 유통금지 및 삭제 △투명성보고서 제출 △관련 물품·서류 등의 제출 의무
- ▶ **전기통신사업법**: △사업신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 텔레그램 등 국내 사업소가 없는 해외기반 플랫폼은 **국내법의 집행력 확보 미흡**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

○(**피해 지원 미흡**) 피해자 지원이 개별법에 따라 주관 기관별\*로 운영되고, 신고 전화번호도 상이하여 불편·혼란

- \* 여가부/다성센터(02-735-8994), 각 지자체별 지원기관(개별 전화), 방심위(1377), 경찰(112, 117)
- 신속한 삭제·차단이 중요하나 관련 인력 부족, 덤페이크 등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탐지·삭제 기술 개발도 필요

○(**인식수준 및 관리체계 미흡**) 기술 발전에 비해 관련 교육·홍보 부족으로 디지털 윤리 의식 수준이 낮고 범죄라는 인식 부족

- 또한, 이슈 발생 시 대책이 추진되나 이후 지속적 점검·관리 미흡

☞ **처벌 강화와 함께 플랫폼 책임성 제고, 피해자 지원 강화, 예방 교육 확대** 등을 위한 **대책 필요**

### 3 입법 및 우선 조치 사항

□ 기초치 입법 사항 : 국회와 협력,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입법 조치 신속히 완료(9.26)

법률	주요내용
성폭력처벌 특례법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반포 처벌 상향,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신설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강요 처벌 신설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처벌 신설 ·신분 비공개수사 사후승인 허용 ·경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방심위에 삭제 요청 의무 신설
성폭력방지법	·삭제지원 주체 확대(지자체 추가)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 정부 우선 조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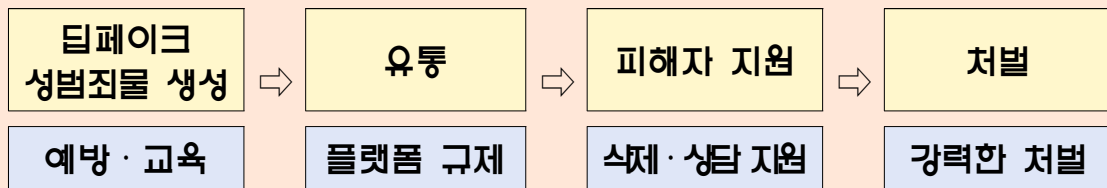
- (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기간 운영\*(‘24.8.28~’25.3.31) △텔레그램 입건전 조사 착수(성착취물·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방조 혐의, ’24.8.28)  
\* 경찰수사 현황(’24.1~10.25): 964건 접수, 506명 검거(10대 411, 20대 77)
- (여가부) △전담 대응팀 운영(8.26~)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내서 제작, 피해지원기관과 공유(검·경, 교육부 등~, ’24.9.6)  
\* 삭제지원(518건), 상담(1,818건) 등 제공(디성센터, ’24.8.26~10.31)
- (방통위) △방심위-텔레그램간 핫라인\* 구축(9.3) △해외 SNS 집중 모니터링  
\* 텔레그램, 방심위에서 요청한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177건, ~9.30), 실무협의 정례화
- (교육부) △긴급대응TF운영(8.27), 학교피해자 현황조사·발표(매주) △특별 예방교육 주간(~9.15) 운영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홍보(카드뉴스, 9.9)  
\* 학교피해 현황(’24.1.1~10.25): 피해신고 542건, 피해자 901명(수사의뢰 457건)
- (국방부) △대응TF운영(8.29~) △내부망 사진 비활성화(9.6) △전군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예방교육(9.5~30) 실시 \* 신고 38건(9.2~10.7) → 이후 4주간 신고 無
- (검찰청) △전담검사(23→43명) 확대(9.2) △디지털 성범죄 대응TF 운영(10.14~)
- (과기부) △딥페이크 탐지 R&D 설명회(9.6, 9.30) △「AI기본법」 공청회(9.24)

## II. 추진방향 및 대책

### 목표

###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 전략



- ◇ 예방-처벌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 구축
- ◇ 범부처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체계 마련

추진 분야	분야별 추진과제(4대 분야 10개 과제)
1.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li> <li>② 수사 대응력 강화</li> <li>③ 국제 사법 공조 강화</li> </ul>
2. 플랫폼 책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li> <li>②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li> </ul>
3. 신속한 피해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삭제 지원 강화</li> <li>②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li> <li>③ 피해자 보호 위한 R&amp;D 및 AI 위협관리 강화</li> </ul>
4.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li> <li>② 대국민 인식 제고</li> </ul>

# 1.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 1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주요법안 9월말 통과)

※ 국민들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그 중 '양형 강화'를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인식  
\* 처벌(45%), 수사·단속(16.1%), 예방교육(13.3%) 순 ('24.6.30, 디지털 성범죄 국민인식조사결과)

### ① 제작·유통 처벌 강화 + 소지·시청 등 처벌 신설

- 허위 영상물 수요 억제를 위해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 신설(성폭력처벌법 개정 완료(9.26))<sup>법무부</sup>  
\*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시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상향(5→7년)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성폭력처벌법 개정 완료(9.26))<sup>법무부</sup>

### 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처벌 신설

- 아동·청소년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더 강한 처벌 규정 신설(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완료(9.26))<sup>여가부</sup>  
\* (현행) 성폭력처벌법 준용(협박1년·강요3년) → (개선) 강화된 처벌규정 신설(협박3년·강요5년)

### ③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신설 추진

-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 신설 추진(성폭력처벌법 개정)<sup>법무부</sup>

### ④ 가해학생 선도 및 특화된 보호처분

- 학교폭력 처리 및 업정 심의,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24.10~, 교육부)
- 가해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 고위험 보호관찰청소년 개입 강화\* 및 치료연계 ▲ 저연령 대상자 심리검사 및 보호\*\* 강화<sup>법무부</sup>  
\* 보호관찰관이 직접 휴대전화 등 검사/ \*\* 보호자교육, 동반면담 등

☞ 개정 완료사항(10.16 공포)은 즉시 실행 조치, 미통과 법안은 신속 개정 노력



## 2 수사 대응력 강화

### ① 위장수사 제도 개선 및 선진 수사기법 도입

- **(위장수사\* 확대)**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 선제적 대응 추진  
(現 아동·청소년만 가능,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무부
  - \*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 등 통해 증거자료 수집, 요건 엄격(검사 청구+법원 허가 필요)
- **(신분비공개수사)**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 신설,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신속 수사 가능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완료(9.26)) 여가부
  - \* 신분비공개수사 :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자료 수집
  - \*\* (현행) 신분비공개수사 시 사법경찰관리는 상급 관서 수서부서 장에게 사전승인 필요
- **(선진 수사기법)** ①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② 독립몰수(검거 前 범죄수익 先 몰수), ③ 인터넷 모니터링\* 등 도입 추진해 범죄 예방 극대화 법무부
  - \* 해외 플랫폼의 국내망 이용구간을 모니터링해(감청) 수사에 활용(마약 등 허용 중)
  - ※ ①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②범죄수익은닉규제법 ③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② 검·경 수사·단속 강화

- **(집중단속)**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24.8.28 ~25.3.31), 시·도청 전담 수사(24~) 및 딥페이크 탐지 **S/W\***(24.2 개발) 활용 등 수사력 강화 경찰청
  - \* 의심 영상을 업로드하면 5~10분 내 가짜영상 여부 판별 → 수사 활용(24.3~8월간 246건 탐지)
- **(전담조직)**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23→43명) 확대 완료(9.2), 지역 거점 검찰청 등에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추가 설치(12→24곳) 추진 중 법무부
- **(상시협업)** 시·도 경찰청 - 관련 검찰청(18개청) 간 핫라인 구축 및 검·경간 상시적이고 신속한 협업체계 마련(~24) 법무부

### ③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매뉴얼 개선

- **(구속수사)**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원칙적 구속수사 엄격히 적용(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sup>법무부</sup>, 매뉴얼<sup>경찰청</sup>)
- **(처리기준 등)** 신중범죄에 대응하여 디지털성범죄 통합 수사 매뉴얼\* 발간 및 사건처리기준 정비(~'25.2), 통일된 엄정한 법집행 추진<sup>법무부</sup>
  - \* 범죄 특성, 그간의 사례, 수사 진행 절차 및 검토 필요사항 등 수사 업무 참고자료
- 양형기준 정비 협의를 통해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 개선 추진
  - \* 성적허위영상물 관련 기소된 87명 중 34명이 집행유예('20.6~'24.6)

## 3 국제 사법 공조 강화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사이버범죄 해외 소재 증거 신속 보전(최대 90일) 도모 → 관련 이행입법\* 추진(~'24)<sup>법무부,외교부</sup>
  - \* 사이버 범죄 관련 세계 최초 국제협약(EU, 美 등 76개국 가입)으로 '22.10 가입의향서 제출, 협약 가입 요건인 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사법공조 네트워크 강화)**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정보 확보 등 수사 역량 확대 및 해외기반 플랫폼의 수사협조\* 유도<sup>법무부,경찰청</sup>
  - \* 佛의 텔레그램 CEO 체포 이후, 텔레그램의 우리나라에 대한 전향적 태도 변화
- 국제 네트워크인 PC-OC, SEAJust에 적극 참여\*,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록 공유 및 증거 확보, 범죄인 인도 등 형사공조 추진<sup>법무부</sup>
  - \* △(Problemes Criminels – Operation of Conventions) 유럽 및 기타 지역 총 49개국 가입 (우리나라 '09년 가입) → 총회 참석 및 주요국과의 양자회의 적극 추진
  - △(South East Justice Network) 동남아시아 및 마일중 등 20개국 가입(우리나라 '23년 가입) → 총회 개최 및 국가간 정기협의체 구성 등 소통활성화 적극 추진
- 외국 수사기관(美 FBI·HSI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유로폴 등)와 범인 수배 및 검거 등 공조 지속<sup>경찰청,법무부</sup>

## 2. 플랫폼 책임성 제고

### 1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

○ **(사업자 제재)**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하여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 추진

\* 오픈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①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 및 ②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해당된다고 적극 해석, 사업자 규제 가능

- ①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요구<sup>1단계</sup> 및 지정의무 통보<sup>2단계</sup>,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대상 통보<sup>3단계</sup>, 시정명령<sup>4단계</sup> 등 의무사항 요구(정보통신망법)<sup>방통위</sup> →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제재

- ② **네이버,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적극 부과(전기통신사업법)<sup>방통위</sup>

※ 영국, 프랑스 등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콘텐츠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도 딥페이크 예방행동 촉구('24.5) 등 **자율규제 중심 책임성 강화 추세**

○ **(투명성보고서 내실화)** 보고서\*를 부실·허위 제출 시에도(현재는 미제출시만 부과) 플랫폼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신설** 추진(정보통신망법 개정)<sup>방통위</sup>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노력, 신고·삭제 처리 결과, 책임자 지정 내용 등 매년 제출

○ **(성범죄물 게재자 제재)**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등 제재 추진(정보통신망법 개정)<sup>방통위</sup>

○ **(모니터링 강화)** 인력 증원, 신기술 도입 등으로 해외 SNS 모니터링 집중 실시 및 범죄예방 강화<sup>방통위,여가부</sup>

\* △(방심위) 인력 증원(12→26명) 및 AI기반 자동 식별·채증 시스템 구축  
△(디성센터) 인력 증원(18→33명)

< 법적 의무에 대한 집행력 강화 >



## 2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

- **(협의 채널 구축)** 국내 포털 및 글로벌 플랫폼 사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소가 없는 플랫폼과도 협의 채널 구축 방심위, 경찰청
  -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9.3), 실무협의(9.27, 28)(방심위) → △삭제·차단 등 요청 적극 수용 △추가 핫라인 설치 △실무협의 정례화 등에 합의
  - 텔레그램과 소통채널 구축(9월 말, 경찰청) → 수사 관련 협조 의사 표명
- **(지을시행 유도)** 'AI 윤리·신뢰성 포럼\*' 등 운영을 통해 AI 안전성 평가, AI 생성물 식별 기술 개발 등 기업들의 책임성 있는 AI 활용 유도·확산 과기부
  - \* 네이버, 카카오, SKT, 한국MS, 구글코리아, LG AI 연구원 등 참여
- **(정보제공 협력)**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한국 법원, 수사기관 공문 등에 대해 가입자 정보제공 등 신속하게 협조토록 공조 강화 경찰청
  - \* 일부 해외 기업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 문서를 근거로 가입자 정보 제공에 협조 중

### 3.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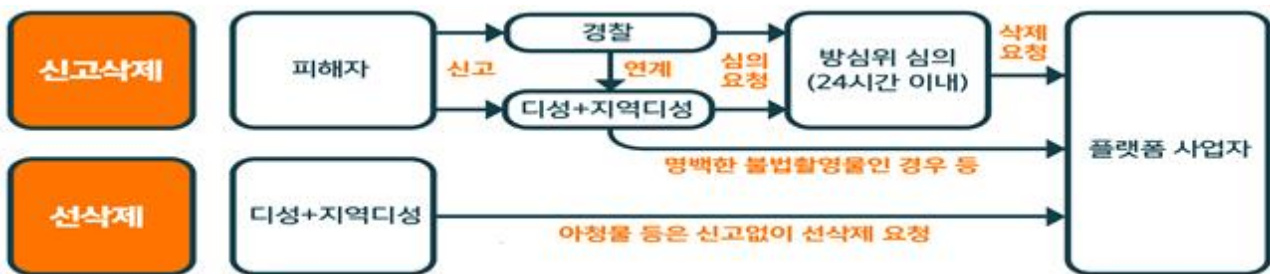
#### 1 삭제 지원 강화

※ 국민들은 피해자 지원 중 '삭제 지원 강화(38%) > 수사법률 지원(22.3%) > 정서적 안정 지원(19.6%)' 순으로 필요하다 답변('24.6.30, 디지털 성범죄 국민인식조사결과)

#### 1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

- (先 차단後 심의)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차단 후 방심위 심의 요청 의무화 추진(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통위
- (삭제시한 명시)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시 사업자의 24시간 시한 명시(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삭제 결과를 방심위 제출 의무화 추진 방통위

< (참고) 현재 삭제 절차 >



- (자동화) AI를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 사업자에 삭제 요청 발송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등 자동화 추진 여가부,과기부

\* △판별 삭제요청, 증거 수집 및 신고 자동화 △신상정보까지 포함하여 탐지삭제 지원

#### 2 삭제·차단 대상 및 주체 확대

- (대상 확대)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근거 마련(성폭력방지법 개정 완료(9.26)) 여가부 등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사기관 연계 피해영상물은 신고 없이 선삭제 지원
- (주체 확대) 국가(기존) + 지자체까지 삭제지원(성폭력방지법 개정 완료(9.26)) 여가부
- (국제공조) 아동 성착취물을 국제적으로 '동시에' 삭제·차단 요청하는 국제대응플랫폼 '아이나래(InaRAE)\*' 참가국을 확대, 국제 연대강화 경찰청

\* 사이트 삭제차단 요청 등 공동 대응('24.7.1~네덜란드만인나태국미국 등 참여중 10월까지 165건 삭제)

## 2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중앙 및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와 각 유관기관 간 연계 및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할 강화

- **(법적근거)**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에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성·체계성 확보 및 역할 강화(성폭력방지법 개정 완료(9.26) 여가부)
- **(신고 일원화)** 전국 피해 지원기관(지역특화상담소 등 17개) 신고 전화 '1366'으로 일원화 + 신고접수 전용 홈페이지 구축 여가부
  - 접수 창구 일원화로, 국민 누구나 성적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발견 시 전용 홈페이지에 신고토록 운영
- **(기관 연계)** 디성센터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및 통합 매뉴얼 마련, 지속 협업 체계 마련 여가부
  - 방심위(1377), 경찰(112/117), 학교(112/117), 군을 통해 접수 시 디성센터에 실시간 연계, 신속 삭제, 상담 등 피해지원 서비스 제공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할>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총괄 기관
  - (초기) 피해 상황 파악·분석 → △삭제 △유포여부 모니터링 △심리상담 등 지원
  - (수사·처벌) 가해자 검거, 고소 등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 상 증거자료 채증 등 수사 의뢰 △ 유관기관 연계, 법률상담·소송 등 지원

- **(인력·예산 확대)** 인력 증원, 예산 확대 통해 센터 역량 강화 여가부
  - 365일 24시간 지원, 모니터링 강화 → 피해자 편의 제고
  - \* 상담창구 운영시간 확대(現 8~22시→24시간), 신속한 선삭제 등 모니터링 기능 강화



## ②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지역센터 운영)** 지역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서울, 경기, 인천, 부산)을 확대 개편해 지역 디성센터(17개) 운영 추진(성폭력방지법 '25.4월 시행)<sup>여가부</sup>
  - 방문상담,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근접지원으로 보호 강화
- **(지역단위 협업)** 지역 디성센터 중심으로 피해지원 사례관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기관\*간 협력·소통<sup>여가부</sup>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 ③ 중앙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중앙 대응센터) 확대 설치·운영(중장기)

- **(허브구축)**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삭제 등 피해자 지원 허브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 디성센터」를 「중앙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sup>여가부</sup>
  -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통신 3사 등 참여, 삭제 지원 및 플랫폼 관리 강화

## 3 피해자 보호 위한 R&D 및 AI 위험관리 강화

- **(기술개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단·탐지·예방 기술 개발 관련 R&D 지원 강화<sup>과기부</sup>
  - \*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 등 과제(3개) 진행 중, 3개 과제 추가(과기부)
  - 사진 등 복제방지기술 개발 및 개인정보 노출 탐지·차단 시스템 고도화<sup>개보위</sup>
- **(특허지원)**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 신속 심사(3개월 내)(‘24.11) 및 핵심특허 선점 등 민간 R&D 지원<sup>특허청</sup>
- **(워터마크)** 콘텐츠 게재 시 AI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의무화(AI기본법 제정)<sup>과기부</sup>, 변형·삭제 등 악용시 처벌 마련(정보통신망법 개정)<sup>방통위</sup>
- **(AI 안전·윤리)** △AI 안전연구소 설치(연내), 딥페이크 탐지 및 정책 모색 △AI 영상 합성 대상으로 운영자가 'AI 윤리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는 AI 윤리 자율점검표 개발·보급(‘24.9.~)<sup>과기부</sup>
- **(AI 규제)** 「AI 기본법」(과기부) 제정 후, AI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제를 담은 'AI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 추진(25.上)<sup>방통위</sup>

## 4. 맞춤형 예방 교육 · 홍보

### 1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 ◆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통·시청 등이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사전에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학교, 청소년 시설 등에서 반복적인 예방 교육 실시

#### 1 (학생) 청소년 맞춤형 영상콘텐츠 보급 및 의무교육확대 등 반복 교육

- (초·중·고) △인식조사 △예방교육 △매뉴얼 제작 △상담 등 전면적 인식 제고
  - (조사) 딥페이크물 학생 인식조사 실시, 예방교육 등 후속조치 마련<sup>교육부</sup>
  - (교육)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에 딥페이크 성범죄 추가(24.10~)<sup>과기부</sup>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디지털 시민교육 확대<sup>교육부</sup>
    - \* 18개 스마트쉼 센터 통해 콘텐츠 강사 등 지원 \*\* 연 1차시 이상 → 15차시 이내로 확대 운영
    - \*\* 수업 시수 확대 : (초)실과 17 → 34시간 이상 / (중)정보 34 → 68시간
  - (매뉴얼) 디지털 성범죄 대응 5종(초등/중등/대학/학부모/교사)\* 배포(24.11~)<sup>교육부</sup>
  - (상담)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학생 상담 실시
- (대학) 인식개선프로그램 운영\* 및 성폭력 담당자 대응 역량 강화<sup>교육부</sup>
  - \* 예방 프로그램 체험 부스 운영(6회) \*\* 담당자 교육(3회) 및 사안처리 모의훈련(1회) 등
- (청소년시설 등\*) △참여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강화<sup>여가부</sup>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 등 해결방안 모색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195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22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355개) 등
- (시청지미디어재단) 전국 초·중·고 100개교 딥페이크 예방교육 실시(24.9~)<sup>방통위</sup>

#### 2 (교사) 교재개발 및 교육연수 등 신속한 교육체계 마련<sup>교육부</sup>

- (교재개발) 예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등 교재 신속 개발(~24.11)
- (교육연수) △선도교원 등 관련 교사 대상 연수 추진(~24.12)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연수 시 디지털 시민교육을 필수과정에 포함



③ (학부모) 온라인 교육·홍보 + 매뉴얼 등 정보 제공

- (온라인 상담)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한 교육·상담·홍보자료 제공<sup>교육부</sup>
  - \* 학생·교사·학부모 디지털 소통 공간 - 질의응답, 전문가 상담, 정보나눔 등 창구
- (정보제공) 교육청을 통한 학부모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콘텐츠 배포<sup>교육부</sup>

④ (군·공공기관) △부대별 예방교육 지속 실시 및 성인지교육 교재 내  
 딥페이크 성범죄 내용 확대<sup>국방부</sup> △공공기관 예방교육 의무 실시\*<sup>여가부</sup>



\* '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개정

**2 대국민 인식 제고**

◆ 여가부·교육부·문체부, 플랫폼 등이 협업하여 공익 캠페인, 온라인 콘텐츠 제작 후 방송·SNS 등 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전개

- (홍보 주간) 여성폭력추방주간(여가부)과 특별교육주간(교육부)을 통합 운영(11월말~12월초), 정부 차원 홍보를 집중하여 효과 극대화
- (캠페인) 10~20대에 영향력 있는 유명인 등을 활용,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캠페인 영상 제작, 방송·유튜브·SNS 등 송출
  - (TV) KBS·EBS와 공익캠페인 전개, 대국민 인식개선('24.10~)<sup>교육부</sup>
  - (SNS 등) 유튜브, 정부대표 SNS 등에 딥페이크 성범죄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게시물 및 영상 확산<sup>문체부,교육부,여가부</sup>

< 캠페인 영상 제작배포 사례 >

구 분	주요 내용	형태	매체 송출	비고
기획물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멈추세요'	영상, 쇼츠	9.24.~11.30. (유튜브)	
	공익캠페인 '딥페이크 성범죄 OUT'	영상	11월 중 (KBS 유튜브 등)	
인터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팀장 ① 심각한 범죄 '딥페이크' ②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안내	영상, 쇼츠	10.18.~11.3. (유튜브 등)	

- (플랫폼 협업) 플랫폼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를 자율 진행토록 협업<sup>문체부</sup>
  - 딥페이크 성범죄 기사 하단에 신고방법, 전화번호 등 노출토록 협조 추진

### III. 관리체계 구축 및 향후 계획

#### 1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 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지속적 관리체계 마련

○ **(범정부 대응체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지속 운영

\* '24.8.29 구성, 국조실·교육·국방·과기정통·여가부, 방통·개보위, 경찰·특허청 등 참여  
- 대응 방안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 **(실무협업체)** 현장 대응 상황 점검 및 범죄유형 분석, 협업 등 논의 위해  
여가부 중심 관계기관 실무협업체 운영(분기별) 여가부·경찰청·방통위·방심위 등

○ **(지역협업)** 지역 디성 중심, 피해자 보호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간 기관간 연계 및 협조 강화

○ **(지자체)** 지자체 합동평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지표\*를 신설, 지  
자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관리 역량 점검 및 강화 여가부

\* 여성폭력 방지 협업체 구성·운영,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 계획 수립,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범죄 예방 홍보·안내 실적 등

##### ②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인력 확대

○ **(예산 및 인력)** 방심위·디성센터 등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피해자 상담 지원 등 관련 예산 증액 및 인력 증원 추진

#### 2 향후 추진 계획

○ 입법 및 예산 사항 정기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

		기 존	개 선
처벌 실효성	처벌 기준	○ 타 불법촬영물에 비해 낮은 제작유포 처벌 (5년 5천만원↓)	○ <b>불법촬영물과 동일수준 처벌</b> (7년, 5천만원↓)
		○ 소지·시청 처벌 부재	○ <b>처벌 신설</b> (3년, 3천만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강요시 처벌(1년/3년)	○ <b>처벌 상향</b> (1→3년/3→5년)
	수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만 위장수사 가능	○ <b>성인 대상물도 위장수사 가능</b>
		○ 신분비공개수사 시 사전승인 필요	○ <b>사후 승인 예외적 허용</b> (긴급한 경우)
		○ 해외 증거보존 곤란	○ 국제 협약 가입 통한 <b>증거 보존</b>
플랫폼 책임성		○ 텔레그램 등에 법상 의무 미부과	○ 정보통신망법상 의무 부과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제재
		○ 투명성 보고서 미제출만 제재	○ <b>부실·허위 제출도 제재</b>
		○ 성범죄물 게재자 제재 부재	○ 게재자에 <b>이용중단, 탈퇴</b> 등 제재 의무화
		○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협의 채널 부재	○ 핫라인 개설 등 <b>협의 채널 구축</b>
피해자 보호	삭제	○ 사업자가 삭제요청 받을 시 先심의 後조치	○ <b>先조치 後방심위 심의</b>
		○ 삭제요청에 대한 사업자 삭제시한 미규정	○ 사업자 삭제시한 명시(24시간)
		○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근거 부재	○ <b>근거 마련</b> (성폭력방지법)
		○ 삭제 지원 주체 국가로만 한정	○ 국가 외 <b>지자체까지 확대</b>
		○ 모니터링-판별-삭제 수동 작업	○ <b>자동 처리</b>
	피해 지원	○ 디성센터 피해 신고창구 다수	○ 디성센터 피해 신고창구 일원화
		○ 학교 등 디성센터와 통합연계 부재	○ 학교 등 <b>원스톱 통합지원체계</b> 구축
		교육과 인식개선	
관리체계		○ 상시 관리체계 부재	○ <b>관계부처 협의체 상시 운영</b>

추진내용(29)	추진기관	추진기한
<b>1.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6)</b>		
1-1.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1)		
①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 추징 도입	법무부	~'25. 上
1-2. 수사 대응력 강화(3)		
② 위장수사 확대	법무부	~'24
③ 선진 수사기법 도입	법무부	~'25. 上
④ 통합 매뉴얼 발간 및 사건처리기준 정비	법무부	~'25. 2
1-3. 국제 사법 공조 강화(2)		
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법무부	~'25
⑥ 사법공조 네트워크 강화	법무부, 경찰청	계속
<b>2. 플랫폼 책임성 제고(6)</b>		
2-1.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4)		
⑦ 법령 적극 해석을 통한 플랫폼 사업자 규제	방통위	계속
⑧ 투명성보고서 내실화	방통위	~'24
⑨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 제재 의무화	방통위	~'25. 上
⑩ 해외 sns 등 모니터링 강화	방통위, 여가부	~'25
2-2.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2)		
⑪ 플랫폼 사업체와 협의 채널 구축 및 협력 강화	방통위, 경찰청	계속
⑫ 기업들의 책임성 있는 AI 활용 유도·확산	과기부	'24~

추진내용(29)	추진기관	추진기한
<b>3. 신속한 피해자 보호(15)</b>		
3-1. 삭제 지원 강화(4)		
⑬ 성범죄 의심정보 선 차단 후 심의	방통위	~'24
⑭ 삭제시한 명시 및 결과 방심위 제출 의무화	방통위	~'24
⑮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식별·삭제요청 등 자동화	여가부, 과기부	계속
⑯ 국제공조 플랫폼 아이나래 확대	경찰청	계속
3-2.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5)		
⑰ 디성센터 신고 일원화	여가부	~'25
⑱ 지역센터 확대	여가부	계속
⑲ 학교-디성센터간 연계	여가부	~'25
⑳ 기관간 실무협의체 구성 및 통합매뉴얼 마련	여가부	~25. 上
㉑ 지역 내 성범죄 피해지원 기관간 협업 강화	여가부	계속
3-3. 피해자 보호 위한 R&D 및 AI 위험관리 강화(6)		
㉒ 딥페이크 성범죄 등 관련 차단·탐지 기술 개발	과기부	계속
㉓ 개인정보 영상 탐지·차단시스템 고도화 및 원본 데이터 복제방지기술 개발	개보위	계속
㉔ 특허우선심사 및 핵심 특허 선점지원	특허청	계속
㉕ 워터마크 의무화 및 악용시 처벌 마련	과기부, 방통위	~25. 上
㉖ AI 윤리 자율점검표 개발	과기부	~25. 上
㉗ AI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	방통위	~25. 上
<b>4.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2)</b>		
4-1.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1)		
㉘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	교육부, 여가부, 과기부, 국방부	계속
4-2. 대국민 인식 제고(1)		
㉙ 대국민 홍보 강화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	계속

# 붙임3

## '24년 정기국회 입법 현황

법률	주요내용	진행 상황
1 성폭력처벌 특례법 개정안 (법무부)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반포 시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법정형 상향(5년, 5천만원↓ → 7년, 5천만원↓, 영리목적 7년↓ → 3년↑) * 불법촬영물(7년, 5천만원↓)과 법정형 일치	국회 본회의 통과 (9.26)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신설 (3년·3천만원 ↓) *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같이 소지 등을 처벌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강요 처벌 규정 신설 (협박 : 1년↑, 강요 : 3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에도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 특례 적용 → 법무부, 충분 검토 의견 / 법무부 대안으로 법사위 소위에서 재논의 예정	국회 법사위 계류
	·허위영상물 반포죄 등과 관련된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민정준호(8.28))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범죄에 사법협조사 형벌감면제 도입 (국유상범(10.14))		
2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이용해 사람을 협박·강요한 죄에 대한 처벌기준 신설 (협박 : 3년↑, 강요 : 5년↑)	국회 본회의 통과 (9.26)
	·현행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승인을 요건으로 하나,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후승인 허용	
	·경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방심위에 삭제통보의무 신설	여가위 계류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사법협조사 형벌감면제 도입(국유상범(10.14))	
3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여가부)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 확대(국가→국가 및 지자체)	국회 본회의 통과 (9.26)
	·불법촬영물 등 외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4 범죄수익은닉 규제법(법무부)	·기소전에도 범죄수익 몰수·추징 가능한 독립몰수·추징제 도입 (국유상범(9.27))	법사위 계류
5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	·불법·허위영상물 제작 유통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 감청 허용 (국유상범(10.14))	
6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 (과기부, 과방위)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결과물에 표시(국정점식(6.17), 민조인철(6.19) 등)	과방위 계류
7 정보통신망법 (방통위, 과방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딥페이크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화	과방위 통과 (9.30)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 이용중단, 탈퇴 등 제재 (반복게재자 제재는 국이상휘(9.23) 안 과방위 계류 중)	미발의
	·투명성보고서 부실·허위 제출 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방통위, 과방위)	·플랫폼 사업자가 先조치하고 방심위에 後심의 요청 허용 (민김태선(9.12))	과방위 계류